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심의위원회 통보 등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96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업무<br>추가 ..... | 3  |
| 2.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 .....                    | 5  |
| 3. 개정안 부칙 .....                                 | 1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6.

3. 회부연월일 : 2025. 6.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러나 최근 충남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4년간의 집단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에 대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

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기관은 그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학교의 장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업무 추가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기관의 업무 중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⑧<br>(생략)<br>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br>⑩ ~ ⑭ (생략)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⑧<br>(현행과 같음)<br>⑨ -----<br>-----<br>-----<br>-----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법률지원을-----.<br>⑩ ~ ⑭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교육감이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개정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규정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규정<sup>1)</sup>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1) **안 제13조의3(중대한 학교폭력 대응 강화)** ② 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사는 제11조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전문기관은 그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2.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의 장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 고발 의무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3조의3(중대한 학교폭력 대응 강화) ① 학교의 장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 및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사는 제11조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전문기관은 그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p> |

|                                                                           |                                                                                               |
|---------------------------------------------------------------------------|-----------------------------------------------------------------------------------------------|
|                                                                           | <p><u>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한다.</u></p> |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략)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u>정할 수 있다.</u> | ⑦ -----<br>-----<br>-----<br>-----한다.                                                         |
| ⑧ ~ ⑰ (생략)                                                                | ⑧ ~ ⑰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① ‘중대한 학교폭력’의 정의

□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학교폭력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2)</sup>.

개정안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을 예로 들면서 일반적인 학교폭력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구체화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행정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 개정안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육부는 학생·학교·폭력유형·지역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학교폭력의 특성상 중대한 학교폭력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임.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시 통보 의무

□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규정<sup>3)</sup>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의위원회 즉시 통보 의무는 현행 법령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통보 의무를 따로 규정할 필요는 적을 것으로 보임<sup>4)</sup>.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법제이론과 실제(2019년)’에서는 ‘즉시’와 ‘지체 없이’를 구분하고 있는데,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고,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음. 이러한 풀이에 따르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③ 시·도교육청 조사 의뢰

-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이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당해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므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인<sup>5)</sup> 교육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④ 수사기관 고발 의무

- 개정안은 전문기관이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관련 입법례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서는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sup>6)</sup>.

---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즉, 중대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대한 학교폭력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특별법에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고발 의무규정은 개정실익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 교육부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고발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⑤ 학교의 장에게 출석정지 조치 부과 의무 부여

- ☐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 ☐ 하지만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즉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고<sup>7)</sup> 무조건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으며,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따로 부여하지 않는 등<sup>8)</sup> 가해학생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 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규정상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부과 진행 절차 비교표】

|                                                                             |                                                                                                                                                                                        |
|-----------------------------------------------------------------------------|----------------------------------------------------------------------------------------------------------------------------------------------------------------------------------------|
| <p><b>일반 절차</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의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청 (단, 요청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li> <li>• 위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li> </ul> |
| <p><b>특수한 경우 ①</b><br/>(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sup>9)</su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 부과 가능</li> <li>•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후 추인 필요</li> <li>※ 가해학생이 거부·회피할 경우 학교의 장은 징계 의무</li> </ul>                                    |
| <p><b>특수한 경우 ②</b><br/>(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sup>10)</su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기구 심의</li> <li>•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 부과 가능</li> <li>•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후 추인 필요</li> <li>※ 가해학생이 거부·회피할 경우 학교의 장은 징계 의무</li> </ul>                    |

## ⑥ 출석정지 기간

□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즉시 가해학생에게 출석

7) 현행 규정은 특수한 경우에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부과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8)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정지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함.

그리고 현행법 제17조제7항의 규정도 함께 개정하고 있는데, 위 표의 특수한 경우에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에서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출석정지 기간 비교표】

|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br>(개정안 제13조의3제3항)               | 특수한 경우 ①,②<br>(현행 규정)                                                           |
|----------------------------------------------|---------------------------------------------------------------------------------|
| 학교의 장의 조치시부터<br>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br>무조건적으로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의 조치시부터<br>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 사이에서<br>출석정지 기간 설정 가능<br>(최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br>가능) |

즉, 현행법에서 특수한 경우 ①과 ②의 경우에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안은, 학교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되 최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만 출석정지 조치를 긴급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이 조항까지 무조건적으로 출석정지를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부과

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합당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의무화한다면 학생의 학습권·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이에 따라 민원도 증가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2. 개정안 부칙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일만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 개정안에는 부칙에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고, 어떠한 학교폭력의 경  
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  
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 정 안                                  | 검 토 의 건                                                                                                                                                  |
|----------------------------------------|----------------------------------------------------------------------------------------------------------------------------------------------------------|
| 부 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br>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br>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중대한 학교폭력 대응 강화에<br>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1항부터<br>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br>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한 학교폭<br>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문 의 처

02)6788-5187